

	위임전결규정	규정번호	3-1-17
		제정일자	2004.03.01
		개정일자	2017.03.01
		개정차수	2차
		소관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대학의 위임전결에 대한 사항은 총장의 인가를 받은 사안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결권자: 각 행정부서의 장
2. 직무대리인: 각 행정부서의 중간관리자(팀장)
3.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: 부서예산 범위 내의 소액의 경상비

제4조(권한과 책임) 각 전결권자의 위임 전결 사항은 행정부서의 별도 품의에 의해 따로 정하며, 정해진 전결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
제5조(제출) 각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처리할 사항에 대해 품의된 결과를 행정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중요사항) ① 각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총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.

② 총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7조(경미한 사항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각 전결권자는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.

제8조(협의) 전결사항 중 타 기관과 관련되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, 협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9조(전결권의 위임) 각 전결권자의 결원, 출장 또는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전결처리가 어려울 경우 해당 부처의 직무대리인에게 전결권한을 위임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전결처리할 수 있다.

제10조(효력)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총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